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

1. 서론

소년법상의 자원보호자제도는 1985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된 제도이다. 이는 보호처분의 하나로서 보호자감호위탁처분과 같이 '1호처분'으로 불린다. 종래 보호자감호위탁처분은 사실상 귀가 조치에 불과하여 처분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보호자감호위탁처분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처분으로서 '자원보호자감호위탁처분'을 창안하게 되었다.

자원보호자제도는 법률상으로는 '감호위탁'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호관찰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내규를 보면 자원보호자의 활동은 '면접·관찰, 보호·지도·원호'이다. 이는 자원보호자의 활동이 보호관찰관과 범죄예방위원(보호위원)의 보호관찰 활동과 유사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자원보호자제도는 보호관찰관이 개입하지 않는 민간위탁형이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감호위탁'을 하는 자원보호자(신병인수자원보호자)가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제도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이 동 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사회학박사)

자원보호자제도가 사법실무상 창안된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형사정책이론적인 의의, 외국의 유사 제도와의 비교, 연혁 등을 고찰하였다. 둘째, 자원보호자전국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보호소년과 자원보호자에 관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는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최초의 전국적인 조사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의의

비행의 원인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통제이론(유대이론)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을 중시하고, 사회학습이론(강압이론)에서는 부모의 양육 과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비행이론은 다시 비행소년처우 과정에서 가정환경의 조정, 특히 부모-자녀관계의 조정이 중요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의 가족이론에서는 자녀양육이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서 자녀양육을 지원해야 함을 지적한다. 양육보호(양호)는 크게 가정양호와 사회 양호로 나눌 수 있고 다시 사회양호는 사회내 양호와 시설양호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비행은 가정양호의 실패로 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양호, 곧 사회내 양호와 시설 양호가 비행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양호는 가족에 대한 지지의 차원인 지원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체적 서비스 중 대체적 서비스에 속한다. 자원보호자제도는 비행소년의 가족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보완적 서비스 또는 대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가족이 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소년보호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국가가 직접 소년을 감호하는 대신에 자원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해 준다는 논리이다.

자원보호자제도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지역사회가 비행 소년의 재통합을 도와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범죄이론으로서는 ‘재통합적 수치이론(Braithwaith, 1989)’, 사법이론으로서는 회복적 사법 이론을 들 수 있고, 시민의 사법참가라는 의미에서는 ‘토의이론적 법이론(하버마스, 2000)’을 들 수 있다.

3. 외국의 유사 제도

외국의 소년사법 절차 가운데서 자원보호자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는 미국의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의 형태와 일본의 ‘보도위탁’이 있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도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과 유사한 형태가 있고, 대만에

도 보도위탁과 유사한 형태가 있다. 미국형과 일본형의 차이는 미국형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의 임시적인 처우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소년법원과 일본의 가정법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법원에서는 영미형 사법구조가 그러하듯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엄격하게 절차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관계로 소년사건을 민사절차로도 형사절차로도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사절차에 상당하는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 위탁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대륙형 사법구조로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분리되지만, 소년법원(소년판사)의 경우에는 민사절차로도 처리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소년의 경우에는 복지행정기관이 단독으로, 그리고 형사책임능력자인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법원과 경합하여 소년사건을 처리한다. 이 때문에 소년사건을 행정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의 처리는 사실상 형사절차로서 처리한다. 따라서 최종 처분으로서 민사적인 성질을 띠는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 위탁처분을 과할 수 없다. 대신에 일본에서는 ‘시험관찰제도’를 창안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에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관찰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보도위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도위탁처(보도수탁자)는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과 유사하다. 1997년 현재 보도위탁처는 갱생보호회가 설립한 것이 49개소, 개인이 설립한 것이 200개소, 사회·아동복지시설이 설립한 것이 51개소, 기

타가 2개소로 모두 302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형과 유사한 소년사법구조이지만 시험관찰제도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법원선의구조가 아니고 검찰선의구조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같이 시험관찰제도를 실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과 유사한 제도로써 자원보호자제도가 창안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과 우리나라의 자원보호자제도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소년사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자원보호자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일본의 소년법을 계수하였다. 일본의 소년법의 연혁은 감화법 시기, 구소년법시기, 신소년법시기로 나눌 수 있다. 감화법시기에는 감화원 수용을 비행 소년에 대한 유일한 보호방법으로 하였다. 감화원 수용은 현 소년법상의 4호처분(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 수용)과 유사하다. 1922년 구소년법 제정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소년심판소에서 9종류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사원·교회·보호단체 또는 적당한 자에게 위탁 처분’ 중의 ‘적당한 자에게 위탁 처분’이 자원보호자제도와 유사하였다.

1942년의 조선총독부 <소년령>에서는 처분의 종류를 6종류로 축소하면서도 위 처분을 존치시켰다. 1948년 제정된 일본의 신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의 종류가 3종류로 축소되면서

위 처분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1958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5종류로 축소하면서 위 처분이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위탁’과 ‘사원·교회 기타 소년보호단체 감호위탁’으로 분리하였는데,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위탁’ 중 ‘적당한 자의 감호위탁’이 자원보호자제도와 유사하였다. 1988년에 전면 개정된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을 7종류로 다양화하면서 자원보호자제도를 겨냥하여 위의 ‘적당한 자’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로 개정하였다.

자원보호자제도는 1983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자원보호자 및 수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내규>를 제정한 후에 준비를 거쳐 1985년 6월 경부터 실시되었다. 그리고 1989년 전면 개정된 <소년심판규칙>에서 자원보호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둬으로써 자원보호자제도가 최초로 법령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전국자원보호자협의회 산하에 11개 지역협의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자원보호자의 수는 960명이고, 자원보호자감호위탁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는 2,212명이다. 2000년 전체 보호사건 가운데서 자원보호자감호위탁처분의 비율은 2000년 약 5.7%이다.

5. 자원보호자제도의 실태

자원보호자제도에는 당사자인 소년과 자원보호자가 있고, 주변의 지지와 감독 기관으로서 소년의 가족, 법원, 자원보호자협의회 등이 있다. 소년과 자원보호자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활동 기간을 보면 95명(49.2%)이 4년 이상, 27명(14.0%)이 3-4년, 38명(19.7%)이 2-3년, 18명(9.3%)이 1-2년, 15명(7.8%)이 1년 미만이다. 지금까지의 총 배정 인원을 보면 35명(17.5%)이 21명 이상, 29명(14.6%)이 11-20명, 28명(14.1%)이 7-10명, 37명이 4-6명, 42명(31.2%)이 2-3명, 15명(7.6%)이 1명이고, 현재 배정인원을 보면 9명(4.5%)이 6명 이상, 14명(7%)이 각각 4명과 5명, 44명(22.2%)이 3명, 61명(30.8%)이 2명, 49명(24.7%)이 1명이다.

② 접촉 횟수를 보면 (소년의 응답으로) 15명(8.3%)이 1주일에 두 번 이상, 88명(48.9%)이 1주일에 한번, 38명(21.1%)이 2주일에 한번, 14명(7.8%)이 각각 3주일에 한번, 1개월에 한번이다. 원하는 횟수를 보면 자원보호자와 소년이 모두 1주일에 한 두번을 가장 선호하고, 1개월에 한번도 자원보호자 중 20명(10.1%), 소년 중 42명(23.3%)이 선호하고 있다. 접촉 시간을 보면 (소년의 응답으로) 9명(5%)이 2시간 이상, 4명(2.2%)이 1시간 30분-2시간, 24명(13.3%)이 1시간-1시간 30분, 91명(50.6%)이 30분-1시간, 52명(28.9%)이 30분 미만으로 대부분이 1시간 미만의 비교적 짧은 시간 접촉하고 있다. 이를 보호위원과 비교하면 자원보호자는 보호위원보다 더 자주 만나는 대신에 더 짧게 만나고 있다.

③ 소년과 자원보호자가 접촉 시 나누는 이야기 내용으로는 소년의 응답에서는 진로(공부와 취업), 가족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 성격·행동에 관한 내용이 많다. 종교에 관한 내용도 자주 한 경우가 23.2%로서 그 다음으로 많다. 자원보호자의 응답으로는

소년과 자원보호자 모두 진학, 가족, 친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소년의 경우는 성격·행동, 생계가 그 다음이며, 자원보호자의 경우는 인생, 성격·행동이 그 다음이다.

④ 소년 중 자원보호자와 취미활동을 함께 한 경우는 16.5%, 취업·기술훈련을 지원받은 경우는 16.4%, 복학·전학·편입학을 지원받은 경우는 20.8%, 물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27.8%. 숙소를 지원받은 경우는 8.7%이다. 이를 보호위원의 경우와 비교하면 자원보호자가 대상소년에 대해 더 많은 원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자원보호자가 소년의 가정을 방문한 경우는 소년의 응답에서는 33.3%, 자원보호자의 응답에서는 67%이고, 소년이 자원보호자가정을 방문한 경우는 소년의 응답에서는 30.4%, 자원보호자의 응답에서는 46.7%이다. 자원보호자의 응답에서 대상소년의 부모를 만난 경우가 94.4%, 형제를 만난 경우가 42.2%, 학교선생님을 만난 경우가 28.9%, 친구 또는 선배를 만난 경우가 35.6%, 이웃을 만난 경우가 7.2%이다. 소년의 가족은 소년의 응답에 의하면 자원보호자와 기꺼이 만났고(94.2%), 자원보호자 활동이 소년선도에 매우 도움이 되거나(66.1%), 약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31.1%).

⑥ 법원은 위촉·해촉과 감호일지 제출을 통해서 자원보호자의 활동을 감독한다. 법률상으로는 법원조사관이 자원보호자의 활동을 감독하게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감호일지를 규정대로 3개월에 한번 이상 제출하는 경우가 약 61%이고 6개월에 한번 제출하는 경우가 약 9%이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약 14%이다. 감호일지를 규정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번거롭고 귀찮다가 38.8%, 작성이 어렵고 형식적이다와 활동상 중요하지 않다가 각각 19.4%이다.

⑦ 법원이 자원보호자에 대한 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보호자를 감독하는 것은 자원보호자협의회이다. 그러나 자원보호자협의회는 재정상의 이유, 회원의 열의 부족 등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원보호자협의회 임원 가운데는 여성이 전체 임원의 15.5%(11명)이고, 주부는 1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원보호자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특히 주부(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6. 자원보호자제도의 개선방안

자원보호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도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제도 외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영미형 사법에서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관계로 소년사건에서 가정위탁보호를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형 사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소년사법에서는 소년 자신의 비행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소년의 가정환경을 포함하는 요보호성이 처분의 주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에 대한 처우가 필요하며 소년에 대한 처우도 전반적인 가족복지라는 틀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불우소년에 대한 가

정위탁보호제도조차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가정위탁보호제도로서의 자원보호자제도가 발전할 수는 없다.

② 보도위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검찰선의제도 하에서 법원이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을 활용하여 일본 소년사법에서와 같은 시험관찰 또는 보호적 조치를 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의 구금기간을 단축하는 전제 위에서 법원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다양한 보호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 소년사법과 아동복지를 제도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소년의 복지적 처우와 관련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년사법에 아동복지제도의 자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4호처분'에서 비행소년을 불우소년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4호처분'과 유사하게 자원보호자제도도 가정위탁보호제도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을 불우소년뿐만 아니라 비행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④ 시민의 사법 참가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시민의 사법 참가의 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과정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유지형'에서 '시민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사법의 한 주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시민의 사법 참가는 사법기관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하나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시민이 사법 참가를 통해서 진정한 시민으로 형성되는 하나의 통로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제도내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은 다음 같다.

① 법원의 자원보호자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자원보호자 활동이 자칫 국가의 경비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형 자원봉사활동이 발전할 수 없다.

② 조사관제도가 정비되고 확충되어야 한다. 법원 조사관은 법관(사법)과 자원보호자(복지)를 매개하는 위치에 있다. 조사관은 전문성(케이스워크 기능)을 발휘하여 조사 활동과 감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자원보호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자원보호자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원보호자협의회는 자원보호자간, 자원보호자와 법원간, 자원보호자와 다른 소년보호단체와

의 의사소통의 매개체이다. 이러한 매개체로서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자원보호자와 소년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원 구성에서 주부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들의 참가를 더욱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④ 자원보호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자원보호자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 활동을 통해서 자원보호자와 사회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어떠한 자원보호자가 소년을 더 잘 보호하는가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자원보호자의 위촉과 해촉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함께 풀어봅시다 통권 제78호(2003년 7/8월호) 정답 및 당첨자

총 40통의 응모엽서 중 정답은 23통으로 정답자 가운데 엄정한 추첨을 거쳐 4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첨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 윤지영
-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265 김경안
- 전주시 덕진구금암1동 793-21 오숙희
- 광주시 서구 화정동 366-1 문정혜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서생활권)을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핵	무	기		다	홍	치	마	
	주		오	이		안		무
수	공	업		아	동		거	인
	산		레	몬		파		도
아		신		드	라	이	브	
부	전	자	전		면		라	식
	주		성	부		경	보	
일		고	시		사	보		절
출	중		대	자		기	우	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1. 들어가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일명, 계좌추적권)은,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법 개정(제7차 개정)시 - IMF구조조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 기업의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한 자금·자산 지원행위에 국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2년 시한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계열사간 부당한 자금·자산 지원행위가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해외편드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 이루어지고,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금융거래정보가 없다면 사실상 부당지원행위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2001년 1월 법개정으로 이후 3년간 더 연장되어 2004년 2월까지 효력이 유지되어 왔다.¹⁾



이 천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그런데, 또 다시 2003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4. 2. 4일로 만료 예정인 계좌추적권을 더 연장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찬반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²⁾ 이에 이 글에서는 계좌추적권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하기로 한다.

2. 계좌추적권의 내용

가. 내 용

1) 행사대상

계좌추적권의 적용대상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이다(법 제50조 5항 전단, 제23조 1항 제7호).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1) 4대 그룹에 대한 4차 부당내부거래조사(2000.8.16~10.14)결과 총 2조 5천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적발하고 442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이 이 계좌추적권의 연장을 위한 결정적인 모티브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2) 계좌추적권을 3년간 더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003. 10.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사를 말하다(법 제11조의2 1항, 영 제17조 1항, 영 제17조의8 1·2항). 이러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즉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상호간의 내부거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유도하여 부당한 내부거래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1조의2, 영 제17조의8).³⁾ 2003년 4년 1일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49개가 지정되어 있다.⁴⁾

“부당한 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한다(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여기서 다른 회사라 함은 주로 다른 계열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행위는 지원주체인 우량기업의 재원을 부실한 계열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을 초래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며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

가 있다.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지원 및 부당한 인력지원으로 나누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행사방법

① 거래자의 인적사항, ② 사용목적, ③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50조 5항 후단).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은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법 제50조 5항 제3호).

3) 행사요건 및 한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예금자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법 제50조 5항).

둘째,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

3)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69조의2 1항).

4) 한국전력공사,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케이티, 한국도로공사, 한진, 롯데, 포스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화, 현대중공업, 현대, 금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두산, 동부, 효성, 신세계, 대림, 동양, 씨제이, 코오롱, 케이티앤지, 농업기반공사, 하나로통신, 동국제강, 현대백화점, 한솔, 대우조선해양, 대우자동차, 현대산업개발, 영풍, 케이씨씨, 대한전선, 동원, 삼보컴퓨터, 태광산업, 부영, 동양화학, 하이트맥주, 대성, 문화방송, 대상, 한국타이어, 농심 등(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3-4-2)).

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50조 6항).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50조 7항).

넷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법제50조 8항).

4) 위반에 대한 제재

계좌추적권의 적정한 행사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69조의2 1항 제8호). 그리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법 제68조 제6호),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6조 1항),

5) 이용실적

지난 5년간(1996.6.~2003.7.) 총 15회에 걸쳐 64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92개 기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였다. 1999년에는 13회 발동하였으나, 2000년과 2001년에는 한 건도 없고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1건이 발동되었다.

[표 1] 계좌추적권 발동회수 (2003.7. 현재)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회 수	13회	-	-	1회	1회	15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3-8-14)

내부거래가 많았던 1999년 5대그룹(현대, 삼성, 대우, LG, SK)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총 13회 계좌추적권을 발동하여 298억원의 지원금액을 적발하였다. 이는 관련 거래규모 6,043억원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과징금 기준으로는 3.4%).⁵⁾

[표 2] 계좌추적권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적발 실적 (1999년) (단위 : 백만원)

기업 집단	지원 업체	수혜 업체	내 용	지원성거래 규모(A)	지원금 (B)	B/A (%)
C 집단	C1	C2	채권고가매입	23,500	2,350	10.0
	C3	C4	전환사채저가주식전환	17,000	1,700	10.0
	C5	C6	기업어음 저리인수	421,000	1,624	0.4
	계			461,500	5,674	1.2
D 집단	D1	D2	신주인수권부사채저가매입	46,759	22,578	48.2
	D3	D4	어음저리인수	96,000	1,546	1.6
	계			142,759	24,124	16.8
총 계				604,259	29,798	4.9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2003-9-30)

5) 이와 같은 실적을 근거로, 계좌추적권을 발동해서 적발한 부당내부거래도 실제 지원액은 극히 미미해 계좌추적권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전경련, 보도자료(2003-9-30)).

나. 타 기관의 계좌추적권과의 비교

1997. 12월 실지명의를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거래법’이라 함)(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2호) 제4조 제6호에 근거하여,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기관과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요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정보요구 외에,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금융기관의 마약류불법거래의 신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외환거래, 국세청장,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금융정보요구가 인정되고 있으며, 각 법률 및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 요건, 범위, 방법 및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한 이들(7개 기관)의 금융정보요구권은 한시적이 아닌 상시제도라는 점에서 또한 차이가 있다.

[표 3]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주체	근거	요구방법 및 제공범위	목적·용도
감사원	감사원법 제27조 2항	-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요구	- 회계감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 1항	- 금융기관의 장에게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관한 필요한 금융거래 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8조 5항	-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	- 재산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제5조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서면에 의한 검찰총장에게 신고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에 있어 수수한 재산이 마약류 불법거래에 의한 불법수익 등임을 알게 된 때 또는 그 업무에 관계된 거래상대방이 마약류 불법거래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된 때
재정부장관 등	외국환거래법 제21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거래정보를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통보 - 외국환취급기관간 정보교환	-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 (지방 국세청장)	상속·증여세법 제83조 1·2항	-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조회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금융정보 분석원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 3항	- 금융기관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	- 보고받은 사항이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료: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금융거래 업무해설(2002.7).

3.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계좌추적권에 대하여는 - 대부분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동 요구권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한 -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⁶⁾

첫째, 개인 비밀의 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계좌추적권이 사회·경제정책적 목적으로 그 운용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사법부의 사전 견제가 필요하고 아울러 행정부 내에서도 계좌추적권에 대한 감사원의 사후감시제도 강화 등을 통해 헌법상의 권리(제17조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좌추적권은 법원의 사전 영장 발부없이 자체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보다 오히려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실정이고 이는 사법부가 계좌추적권 발동 허용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⁷⁾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편의주의의 심화와 내부통제장치

미흡으로 계좌추적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영장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거래자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검찰도 영장발부 없이 공정위 등의 협조를 통하여 계좌추적이 가능해지는 등 행정편의주의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정위에 의한 내부통제는 크게 미흡하고(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및 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1조), 부당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과 '상당한 혐의' 여부를 자체적 판단에 의하므로 불법여부가 구체적인 조세법 등의 경우보다 계좌추적권 발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다.⁸⁾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의 지속적인 운용을 뒷받침할 법적, 기업환경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내부거래는 탈세, 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가 기본적으로 아니며, 선거나 공직자 윤리 등 공익의 목적과도 구분되는 것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중요도나 긴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기업관련 제도는 - 계좌

6) 이에 대하여는 대한상공회의소, 계좌추적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03, 7쪽 이하; 전국경제인연합회, 계좌추적권을 더 연장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이유, 보도자료(2003-9-30); 동,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개선과제, 1998; 동, 내부자거래와 계좌추적권: 쟁점과 과제, 200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이렇습니다, 보도참고자료(2003-8-14); 정무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경재 의원 발의 및 정부제출) 검토보고서(2000-12-4) 등 참조.

7)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포괄적 압수·수색영장이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계좌추적권을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전담판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매일경제, 2003-5-20).

8)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부당내부거래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회사에 대한 조사이어야 하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10일 이내 명의인에게 서면통지 의무화, 지득한 정보의 타인 제공·목적외 사용시 형사처벌 하는 등 그 발동대상 및 요건, 남용방지 등 통제장치가 다른 법률보다 엄격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동안 동요구권의 실제사용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용이나 비밀누설이 문제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한다(1999. 6~2003. 7.간 15회에 걸쳐 92개 기업의 금융거래정보요구(64개 금융기관))(보도참고자료, 2003-8-14).

추적권이 도입된 때인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 계열사간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고,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되었으며,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용이해졌고, 기관투자가 및 우리사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어 이중삼중의 경영감시 장치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계열기업간의 내부거래는 주주와 채권자의 기업견제와 같은 시장자율에 의한 규제가 보다 타당하다는 것이다.⁹⁾

4. 개선방안

독점규제법의 특성상 규제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제도의 남용우려가 있고, 이러한 계좌추적권의 발동은 기업의 이미지와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조사 및 행정소송 등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피조사기업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 다른 기관에 의한 계좌추적권과 비교하여 - 동 제도에 대한 논란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계좌추적권의 연장(또는 상시화) 문제는 입법정책적 결단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만약 이 제도가 지속된다면 위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안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좌추적권 남용방지를 위한 통제제도 강화 방안으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포함하여 정부가 행하는 모든 계좌추적권은 법원의 사전영장에 근거하여 발동하도록 하는 방안, ② 계좌추적권 발동에 대한 행정부내 사후 통제장치 마련, 즉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이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후심사 및 결과공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③ 금융기관의 고객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사후통지 유예기간(행정기관이 요청하면 -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의2 2항·3항에 의해 - 계좌가 추적된 사실조차 최장 1년간 본인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한 조항)을 없애거나 단축하는 방안,¹⁰⁾ ④ 현행 계좌추적권 발동 요건 외에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발동을 결정했던 것을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동하는 방안,¹¹⁾ ⑤ 금융실명거래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금융감독원에 계좌추적을 의뢰해 발동시키는 방안¹²⁾ 등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9)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그룹사례에서 보듯이 부당지원행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 지원 등 그 수법이 더욱 은밀·다양화되어(그간 확인된 부당내부거래의 86.7%가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였음), 금전신탁 예치내역, 금전신탁과 계열사간 거래 등 금융거래정보가 없으면 조사가 곤란하고, 동 요구권의 보유 자체가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한다(보도참고자료, 2003-8-14).

10) 대한상공회의소, 계좌추적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03, 12쪽 이하.

11) 서울경제, 2003-9-2 참조.

12) 제일경제, 2003-10-08.

음란채팅의 규제상 문제점과 대응책

1. 서 언

얼마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터넷채팅서버를 곧 폐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¹⁾ 인터넷사용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엄청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채팅서버를 폐쇄하겠다는 이유는 인터넷채팅이 순수한 기능으로 발전되지 않고 아동포르노, 폭력, 음란 쪽으로 역기능화하고 있음을 문제시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인터넷채팅은 인터넷채팅서버에 접속하여 미지의 상대방과 키보드입력에 의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을 말하는데, 이러한 채팅기능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조용히 의사교환을 할 수 있으며 대화 중에 필요한 자료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도 있는 등 많은 순기능을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터넷채팅을 이용하여 원조교제를 제



정 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의하거나 알선할 뿐 아니라 대화내용이 음란, 폭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어머니모니터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채팅사이트의 대부분이 연령에 구분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서는 포르노 동영상

이 상영되고 청소년의 자위행위가 생중계되는 사이트까지 적발됐다고 한다.²⁾

인터넷채팅은 우리에게 새롭고 즐거운 많은 문화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위와 같은 역기능의 심화로 인하여 그 대응 및 개선책의 연구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음란채팅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대응책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1) 문화일보, 2003.9.24자, “마이크로소프트, 채팅방 폐쇄” 기사 참조.

2) 2003년 3월부터 모니터링한 결과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21개 채팅사이트 중 67%가 회원가입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고, 87%는 연령 구분 없이 가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C 채팅방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위행위가 무차별 생중계됐고, O 채팅사이트에서는 화상채팅 화면 한쪽에 계속 포르노 동영상이 상영됐다. 이들 채팅사이트에서는 대화방 이름 자체가 ‘나 교육시켜줄 누나’, ‘남녀 혼탕놀이’, ‘자위 보여주실 분’ 등으로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연상시켰고, 사이버놀이방 역시 ‘술집놀이’, ‘기생놀이’ 등으로 성인들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 왔다고 한다. 문화일보, 2003.5.29자 “청소년사이트, 음란물 창고” 기사 참조.

2. 음란채팅의 실태

최근 조사에 의하면 현재 청소년들의 인터넷채팅 이용률은 88.8%에 이르고 있으며 채팅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단지 11.2%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³⁾ 채팅이용 청소년의 채팅이용 동기에 대하여는 34.1%가 심심해서 시간을 때우려고 이용하며,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10.0%,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10%로 나타났다. 또한 채팅대화의 주제도 아무 이야기나 한다가 40.4%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채팅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채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채팅이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중독에 빠지게 한다’가 40.3%, ‘사이버음란물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가 13.9%로 나타나 인터넷채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⁴⁾

한편, 한국사이버감시단이 인터넷채팅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대화방 1만 3백여 개 중 40%(4천6백여개)가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화방 제목부터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2,480개에 이르렀다고 한다.⁵⁾

음란채팅은 예컨대 불건전게시물 및 불건전방제목 도배, 음란방 개설 및 유인, 욕설 및 저속한 언어사용, 음란물 게시 및 음란행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화상채팅의 경우 이용자

가 음란한 방제목을 만들어 음란 동영상정보 등을 유통시키거나 화상캠(카메라)을 이용하여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직접 보여주거나 심지어는 섹스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서울시내 남녀 중고생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3.7%가 1주일에 1시간 30분 이상 인터넷음란물을 본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음란물을 보는 청소년 가운데 9%는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7.2%는 원조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들이 접한 음란물의 종류는 동영상 63.3%, 사진·만화 63.1%, 소설 30.6%, 태팅 16.4%, 음란동호회 가입 14.6%, 섹스샵 조회 11.9% 등으로 나타났다.⁶⁾

특히 PC카메라 보급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음란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형식의 음란채팅이 유행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탈선과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채팅은 이른바 청소년성매매(종래의 원조교제)의 제의와 알선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역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용돈과 사치를 열망하는 일부 청소년들이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공간에서 스스럼없이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제의하거나 알선하기도 하고 반대로 성

3) 서미정,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채팅실태 조사연구” 강원대 석사논문(2002)

4) 서미정, 앞의 글 21쪽 이하 참조.

5) 중앙일보 2002.10.19자 “인터넷대화방, 음란 판친다” 기사내용 참조.

6) 국민일보, 2001.6.19자 “[인터넷음란물 이대론 안된다] (1) 청소년 중독실태” 기사내용 참조.

인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의하기도 하는 것이다.⁷⁾

이와 같은 청소년성매매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고생의 1.8%가 실제로 경험해본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여자는 71.4%, 남자는 28.6%였다고 한다. 이들이 청소년성매매로 나온 이유에 대하여는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하여가 54.3%, 브랜드 옷·가방·신발 등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가 42.9%,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25.7%였으며, 상대방과의 접촉경로는 인터넷채팅이 28.6%, 전화방 25.7%, 헌팅 22.9%, 친구소개 22.9%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⁸⁾ 결국 청소년성매매의 주요수단으로 인터넷채팅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음란채팅과 사이버성폭력

최근에는 남의 명의를 도용해 사이버공간에서 성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헤어진 여자친구 이름으로 음란한 글을 올린 속칭 사이버스토커가 검찰에 적발되거나,⁹⁾ 또는 펜팔사이트에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인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해 스토킹 전화에 시달리게 하거나,¹⁰⁾ 또는 특정 여성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나체사진이나 난처한 글을 보내어 괴롭히는 등¹¹⁾ 이른바 사이버성폭력이 극심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높은 이유로 가해자의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관계로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도가 낮아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에 게시된 정보는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정도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최근의 각종 매스미디어상에 제시된 인터넷 이용자 조사결과들은 사이버성폭력이 우리 사이버공간에 만연되어 있고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여성부가 사이버성폭력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사이버감시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가상공간에서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¹²⁾ 인터넷 채팅에 참여하는 네티즌의 22%는 채팅상대방이 음란한 쪽지를 보내거나 대화를 걸어오면 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채팅(일반채팅)사이트에서 음란한 제목의 대화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7) 인터넷채팅에 의한 성매매의 상세한 실태에 대하여는 정경숙, “십대소녀의 성적 거래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신라대 석사논문, 2000), 36쪽 참조.

8) 한국청소년상담원공동조사, “청소년성매매 경험실태 및 설문조사결과”, 청소년소식 2000년 7월호

9) 중앙일보, 2001.10.18자 관련기사 참조.

10) 조선일보 2001.7.5자 사회면 “사이버 스토킹 회사원 첫 영장” 기사 참조.

11) 조선일보 1999.2.17자 사회면 “여성법조인 노린 간 큰 스토키” 기사 참조. 또한 사이버성폭력의 수단으로서의 사용 등 E-mail의 부정사용에 대한 각종 사례와 형사적 규제에 대하여는 정 완, “이메일의 부정사용과 형사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2001년 11/12월호 참조.

12) 이 조사는 800만명의 실명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음악전문사이트 벅스테크(bugsmusic.co.kr)의 회원을 상대로 2001년 4월과 7월, 8월에 실시됐다. 조선일보 2001.12.4자 관련기사 참조.

가'(총 8,887명 응답)라는 물음에 41%가 '호기심이 생긴다'고 답하였고, '불쾌하다'는 34%, '직접 참여한다'는 9%로 나타났다. 채팅에서 '타인이 음란한 내용의 쪽지나 대화를 걸어올 경우'(7,142명)는 '무시한다'가 59%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같이 참여한다'도 22%에 달했다. '채팅사이트에서 음란대화방을 본 적이 있는가'(6,148명)라는 질문에는 '자주 본다' 36%, '가끔 본 적이 있다' 28%로 경험비율이 6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팅 목적'(5,919명)은 '이성친구 사귀기'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화상채팅의 경우도 '화상채팅 중 불편한 대화방을 본 적이 있는가'(3,198명)라는 물음에 '자주 본다' 34%, '가끔 본 적이 있다' 30%로, 화상채팅 사이트가 음란·불건전 정보 유통의 온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채팅 이용 중 음란 쪽지나 귓속말 등을 받은 적이 있는가'(2,817명)에는 '매우 자주 받는다'(1회 접속시 5-6회 이상) 19%, '자주 받는다'(1회 접속시 2-4회) 11%, '가끔 받는다' 22%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런 경험이 없다'는 38%로 파악됐다. 이밖에 '사이버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3,870명)에는 43.2%는 '느낀 적이 있다'고, 24.4%는 '체험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본 적은 있다'고 각각 답했다. 그러한 경험의 장소는 '대화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4,567명)라는 질문에는 42.7%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대답도 26.0%에 달하였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실시한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조사결과¹³⁾에 의하면, 1999.8부터 2000.7까지 1년 동안 네티즌 5명중 1명(전체의 22.4%)꼴로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성희롱이나 사이버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사이버성희롱 피해율은 전체의 21.3%이고, 사이버 스토킹 피해율은 3.3%이었다. 한편, 이성으로부터 언어폭력 피해율은 26.6%, 사이버 매매춘 권유경험율은 7.1%이었다. 사이버 성폭력을 한 번이라도 행한 적이 있는 네티즌은 전체의 7.5%로서, 피해율의 1/3정도였다. 언어폭력 가해율은 17.1%, 사이버매매춘 가담율은 0.8%, 음란물 유통판매는 0.8% 등이 행한 적이 있다. 주된 피해대상을 보면, 성별로 남성네티즌은 19%인데 비해, 여성네티즌의 27%가 피해경험이 있으며, 연령대로는 20대와 10대의 피해율이 각기 26.7%, 24%으로, 대체로 젊은 여성층이 주 피해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이상에서의 각종 통계 및 조사결과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쾌한 성적 메시지전달, 성적 모욕·성희롱 등이 새롭게 등장한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내용은 성과 관련된 행위(성기, 키스나 포옹 등의 행위) 묘사, 번색, 컴섹, 매매춘 등의 제안, 흥분시켜주겠다는 제안 등이고, 양태는 반말조로 음란대화 강요, 강제적·

13) 서울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다. 상세한 내용은 정진수·정 완·김은경, 신종성폭력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참조.

14)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보다 다양한 내용의 조사자료 및 분석에 대하여는 정진수·정 완·김은경, 앞의 책, 51쪽 이하 참조.

단순 반복적인 대화요구, 예외로 무장하여 제안하는 경우,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단 초대 한 뒤, 노골적으로 음란성대화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4. 음란채팅과 인터넷성인방송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성인방송에서의 음란방송은 일방적 시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자키들의 실연도중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하여 많은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고 그에 응하는 형태로 방송이 행해지고 있어 인터넷성인방송의 방송행태는 인터넷채팅이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방송(Webcasting)이란 그림(image), 오디오(audio), 동영상(video) 등을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가공, 압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인터랙티브 서비스(interactive service)를 말한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초고속망의 보급 등으로 전송망 환경이 개선되고, 오디오 및 영상정보의 압축, 복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방송은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매체로 등장하였다.¹⁵⁾

문제는 이러한 인터넷방송은 기존 형태의 방송과 달리 특별한 허가나 인가가 필요없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유로이 행해질 수 있어 난립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아울러 방송이 내용이 인권침해, 명예훼손, 음란, 폭력 등으로

흐를 경우 큰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성인방송의 범람과 더불어 인터넷미디어의 선정성 및 폭력성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성인방송들은 대개 주민등록번호를 체크하여 미성년자의 입장을 불허하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원용하는 것은 이미 고급수준의 인터넷이 용자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또한 현행법제가 성인들의 음란물 이용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인터넷성인방송에서 행해지는 각종 음란한 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게시판을 통하여 음란물의 유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성인방송의 성업은 우리의 성문화를 매우 어지럽히고 있을 뿐 아니라 성인 및 청소년들에게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방학을 맞은 여대생들중 상당수가 밤업소를 전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인터넷성인방송국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인터넷자키(IJ)로 아르바이트를 자원하고 있어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¹⁶⁾

인터넷성인방송의 음란성 정도를 살펴보면, 이른바 인터넷성인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자키(IJ)는 가슴을 드러내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음부와 젖가슴을 쓰다듬는 등 온갖 음란한 동작을 취하거나 네티즌의 요구에 따라 음모를 보여주거나 음모를 뽑아 보이고, 팬티도 벗어버리고, 음부 및 전신을 쓰다듬는 등 자위행위와 함께 음란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방송을 진

1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웹캐스팅 산업백서, 2002. 4쪽 참조.

16) 일간스포츠 2002.8.9자 “[르포] 짜릿한 걸, 여대생 알바가 점령” 관련기사 참조.

행하고, 음란한 사진, 야담을 게시하는 등 일반 시청자에게 음란한 방송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상황이다.¹⁷⁾

문제는 이러한 성인 인터넷방송에 청소년들이 가입하여 이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 방송문화의 고사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성인 인터넷방송의 이러한 행태는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명백히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성인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난립과 고객 유치 경쟁으로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나 정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상당수의 인터넷성인방송업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에 제공시 그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지만, 청소년들은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지는 성인 주민등록번호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고, 가입회비 결제도 신용카드나 휴대폰결제가 아닌 온라인 결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청소년에게 무방비 상태이며, 주민등록번호와 실명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의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이 얼마든지 위 인터넷성인방송을 이용하여 음란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라 하겠다.

5. 음란채팅의 규제근거와 대응책

음란채팅의 내용은 그것이 문자이든 화상이든 동영상이든 광의로 볼 때 사이버음란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다. 즉, 인터넷채팅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이나 동화상 등 포르노그라피를 전달하는 사이버음란물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음란채팅을 처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음란채팅의 규제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화상)채팅이 증가¹⁸⁾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와 아울러 그 대응책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해외의 음란성인방송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방안이 요구된다. 음란성인방송에 접속

17) 임용규, “디지털방송과 형사·민사책임” 2001년 정보법학회심포지움 발표자료 참조.

18) 최근에도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성행위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거나 서로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일삼아온 직업군인과 가정주부, 초등학교 교사, 연극배우, 간호사, 고교생 등 46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문화일보, 2003.4.2자, “음란화상채팅 교사 등 46명 적발” 기사 참조.

하여 행하는 일이 바로 채팅인데 당연히 그 성격상 음란채팅일 수밖에 없다. 성인방송 등 인터넷미디어의 국내에서의 일탈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외국에서 국내로 송출되는 인터넷성인방송의 일탈행위에 대하여는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결국 당해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에 의하여 단속할 수밖에 없는바 사이버범죄방지조약 등 국가간의 형사사법공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¹⁹⁾

다음, 미성년자의 사이버범죄 신고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음란채팅 또는 음란성희롱, 또는 사이버음란물 전송 등 인터넷채팅상 발생하는 많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 당사자이고 목격자이다. 또한 사이버범죄는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편리하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신고가 바로 되지 않고 부모와 상의한 후에 부모를 통하여 신고토록 되어 있어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아마도 초중고생 등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신고를 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취해지고 있는 조치로 보이는데,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청소년인 만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이버범죄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오히려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인터넷 및 사이버 범죄의 대책을 부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

한 내용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6. 결 어

이상에서 인터넷 음란채팅의 실태와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음란채팅을 포함한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

음란채팅, 인터넷성인방송 등 음란채팅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의 정비도 물론 기초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외에도 인터넷이용실명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이용자에 대한 교육강화 및 윤리의식 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채팅관련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활동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²⁰⁾ 인터넷범죄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음란채팅을 근절하기 위하여 어렵더라도 필터링 등 각종 기법을 이용하여 음란채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 참고로 발효를 앞두고 있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 완 외 2인,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 2001) 참조.

20)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요 채팅사이트 운영업체들 간에 음란채팅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전자신문, 2003.6.5 “채팅사이트, 음란채팅 추방 팔 걸었다” 기사 참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검토

1. 들어가며

수년을 끌어오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9월 24일 정부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이 법률안은 2000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이 지속적으로 부처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던 중 정부안으로 유일하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다. 2001년 동명의 법률안이 보건복지부의 제안으로 나오기는 하였지만, 결국 다른 부처의 이견과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 법률안은 약간의 자구수정만 거쳐 김홍신의원의 발의로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련된 법률은 우리 생명공학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지체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법률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함의 때문이다. 실제로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률들은 각양각색의 이해관계와 철학, 도덕, 종교관이 얹혀있다. 결국 문제는 이



신 동 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러한 갈등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골자를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였고, 여전히 남겨진 문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요

정부가 밝히고 있는 이 법률의 입법 동기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질병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동기는 1)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 2)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의 보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다시 1-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2-2)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추상적 목표에 지향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일수, 생명공학·유전공학의 발달과 새로운 법적 과제, 계몽연구의 발전과 법적 과제, 한남대학교 법과대학/과학기술법연구소 2003년 학술 심포지움 기초연설문, 1 이하.

- 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國家生命倫理審議委員會)를 설치하고,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함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 나. 인간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복제배아(體細胞複製胚芽)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1조).
- 다.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성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13조).
- 라.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8조).
- 마.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바.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하며,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
- 사.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정도관리(精度管理)를 받도록 하고,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며,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아.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며, 유전자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얻거나 알게 된 유전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5조).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 심사를 거쳐 탄생하였다. 정부의 법률안에서 주요 관심으로 작용한 것은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통일적인 기본법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첨예하게 대립된 생명윤리와 생명과학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있었다고 보인다.²⁾ 정부안은 생명공학 육성발전이라는 측면과 생명윤리의 존중이라는 양측면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은 생명과학 육성과 평면적으로 조화될 수 없다. 생명윤리는 생명공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제되어야 한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이를 좀더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3. 법률안 검토

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성격

생명윤리심의위원회(안 제7조 내지 제11조)는 기존의 정부안이 생명과학과 윤리적 쟁점

2) 정부의 입법과정에 대하여는 신동일, 생명공학 남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88이하.

사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구성한 생명윤리자문 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격상시킨 것이다.³⁾ 이 심의위원회에는 정부의 각부처 장관들(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법제처장)이 위원으로 된다(안 제7조 제3항 제1호). 그 밖의 위원은 국무장관들로 구성된 당연직위원 이외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에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 또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7인 이내의 위원과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 또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7인 이내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할 수 있게 하였다(안 제7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

문제는 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추측하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제정 과정이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처럼 고위직 참여의 위원회 구성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긴 한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처음부터 ‘형용의 모순’이다. 심의위원회는 1)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에 관한 사항, 5)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6) 그 밖에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 중에서 특히 안 제17조의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나 안 제22조의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는 엄밀히 말해서 ‘심의’행위가 아니라 ‘자문’행위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일단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업무와 중복된다. 국무회의의 일반 의결사안을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심의할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률안은 대부분의 이 법률안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권한행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수 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의심스러운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이다. 심의위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가 분명하지 못하다.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 정부부처의 이해관계인이 각 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지금까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의 제정과 같은 혼란이 이제 심의위원회 내부로 유입되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어 보인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관리를 단일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로 단일화하고 법제처, 교육인적자원부,

3) 기존의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 검토로는 신동일, 위의 글, 88 이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는 포함시키지 않은 원래의 법률안이 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자문 또는 심의위원회는 문제되는 신청이나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에 따라 해석해주는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 심의행위는 법률과 심의대상행위의 적용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새로운 입법을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일개 위원회가 어떤 중요 사안을 주관적으로 결정한 것을 법률로 인정한다면, ‘백지위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더욱이 인간의 생명과 같은 중요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결정하여 법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할 뿐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있다.⁴⁾

나. 인공수태에 관한 사안

이 법률안은 그동안 여성단체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에서는 생명과학의 대부분이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하여 이루어진다는 모티브를 중요시하고 있다.⁵⁾ 그로 인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여성부 장관을 배치시키는 등의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인공수태에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현재 인공수태와 임신에 관한 하위법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단 몇 개의 조문으로 이를 다 해

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인공수태와 관련하여 배아 생성과 보관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인공수태에 관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의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⁶⁾ 인공수태의 전제와 기준에 대한 사항과 각각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개별 법률이 반드시 필요 하며, 이를 통하여 인공수태와 불임시술에 관한 기준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나타나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수태와 불임시술이 현행 의료법상 치료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료유사행위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불임시술소들은 법적 규제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 배아 연구

법률안은 제17조 이하에서 잔여배아 연구, 제24조에서 체세포 복제 배아의 생성과 연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17조 제1호에서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는 근이영양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 연구(동조 제2호),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연구⁷⁾(동조 제3호)의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가

4) 현재 91.7.8, 91헌가4; 98.3.26, 96헌가26

5)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2000, 489 이하.

6) 인공수태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Athena Liu, Reproduction and Reproductive Rights, 1991.

7)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다시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 잔여 배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잔여배아를 이용하여 불임치료 연구를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피임연구를 위하여도 잔여배아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피임 연구는 소위 어떻게 하면 배아를 쉽게 죽이느냐의 연구이다. 그렇다면 이 조문은 배아를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 연구에 인간의 배아를 사용하라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여기에 피임연구가 필요한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또한 안 제23조의 체세포핵이식의 허용 규정은 장치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다. 이에 대한 논쟁에서 하나의 주장방식은 이미 선진국 일부가 이를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영국 등 몇 개 국가들이 허용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객관적 사실과 이와 조금 다르다. 언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국의 2001년 12월의 하원 통과법률은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의 시행령이며 본법에서는 여전히 이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은 배아에 대한 전담 관리 기관인 HFEA(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에서 개별적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항목에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배아연구를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시행령의 개정이 곧바로 인간 배아에 대한 복제와 연구가 실현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⁸⁾ 실제로도 영국은 인간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치료목적의 배아를 생성하는 것에 단 한 건도 허가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기간을 도

과하여 인간 배아를 보관한 과학자를 형사처벌한 경험이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어야만 복제 배아를 연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동물실험이나 의학적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배아관리국(HFEA)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한다. 배아관리국의 심사위원들이 거의 자연과학자들이 아니며, 대부분은 종교계와 철학, 윤리학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⁹⁾

체세포 핵이식을 이용한 배아의 생성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합리성이 충족되어도 규범적 정당성이 없다면 무리한 허용이라고 보인다. 이 규정은 생명과 인권에 대한 국가적 이해를 드러내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기도 하다.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라. 유전자 검사

이 법률안은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제4장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 정보와 검사의 문제 역시 생명과학과 윤리에서 심각하게 논의되는 분야이다. 특별히 유전정보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관한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제31조). 안 제26조 제4항은 동의없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사체 또는 의식불명의 자에 대하여 개인 식별을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

8) 자세한 황만성, 인간의 생식자와 배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2002, 95 이하.

9) HFEA, Code of Practice 6th ed., 2003.

우(동조 동항 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동조 동항 제2호)가 그것이다. 유전자 검사의 법적-사회적 효과는 개인을 초과한다. 특히 최근 개발된 DNA 분석에 의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염병의 원인 분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전자 검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관리와 통제 역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은밀한 유전자 차별과 선호가 진행될 것이며, 그 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유전자 치료술

이 법률안의 제6장은 유전자 치료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안 제36조에서는 각종 유전 질환, 암, HIV 감염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유전자 치료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1항 제1호). 또한 현재 치료방법이 없는 질병에 대해서 효과가 예측되는 치료술로서 유전자 치료술을 시행할 수 있다(동조 동항 제2호). 여기서는 체세포 치료술(somatic cell therapy)의 경우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조의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자, 난자,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 치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치료의 유전적 효과를 기대하는 “배아줄기세포 치료술”(embryonic stem cell therapy)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 치료는 소위 “맞춤 아기”(designer baby)의 가능성 때문에 문제시되는 치료법이다.¹⁰⁾ 다만 체세포 치료술 역시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술이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체세포 치료술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배아 줄기세포와 관련되지 않은 체세포 치료술이란 이 법률이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의학적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바. 기 타

이 법률에 따르면 잔여 배아의 보관기일을 5년으로 하고 있다(안 제16조 제1항). 물론 동의권자가 그 이하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보관기간의 5년은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우리가 예로 많이 들고 있는 영국도 원칙은 배아는 목적이 사라진 이후 즉시 폐기하고 보관의 경우 최대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배아가 생성중인 인간의 생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법률에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나 합성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실제로 유전자 조작 식품과 합성물, 의약품 등은 우리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표기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규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유전

10) 신동일, 생명윤리의 형법적 보호, 특히 배아간세포치료술금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15호, 2001, 125 이하.

11) 간략한 정보는 McHughen, A Cosumer's Guide to Genetically Modified Food, 2002.

자 조작에 의한 위험성이나 폐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표준적인 조치기준이 빠진 것이 아쉽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안에는 행정적 조치와 형벌 조항이 혼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형벌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형사법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보다 구체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제48조의 벌칙 조항에서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체세포핵이식행위와 이식행위)을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체세포 핵이식 사실에 대한 인지 없이 단순한 기술을 한 자도 역시 포함되는지가 분명치 못하다. 형법 이론적으로는

목적범 형태의 처벌법규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결국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지기 쉽다.

4. 마치며

이 법률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토론의 결과이다. 그만큼 생명윤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¹²⁾ 앞으로 국회에서 다시 토론과 검토를 거치겠지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철저한 검증과 토론을 거쳐서 일반인의 승인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 타당성과 합리적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타인의 생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연구소식 투고안내

투고내용 :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범죄문제 등에 관한 논단 및 제언, 번역자료, 학술동향 등

응모자격 : 1. 형사정책관련분야 석사과정을 마친 자

2. 형사사법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및 연구경력자

원고매수 : A4용지 80칼럼 25행으로 5~6매 정도

원고마감 : 2003년 12월 10일(12월말 발간예정)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지급(단,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한함)

참고사항 : 1. 소식지의 성격을 감안하여 가급적 평이한 수준

2. 원고는 PC(아래아한글프로그램)로 작성하여 송부(e-mail 송부 가능)

3. 투고자의 연락처를 명기하고 상반신 사진 1매 제출

보내실 곳 : kneky@kic.re.kr

12)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 2003, 183.

인권보호와 경찰의 역할

1. 시작하는 말

최근 7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인조 연쇄 강도 살인 피고인이 강도 살인 및 강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이 살인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미제사건을 전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거가 불충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시의 인권침해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 인권은 최고의 가치로 존중되고 있으나 누구의 인권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 또한 적지 않다.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형법의 규제대상이 되는데 범죄피해자의 인권보다는 범죄자의 인권보호에만 관심이 있다는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법집행의 최일선기관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신 의 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약·조직범죄연구센터 소장,
법학박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있다(경찰법 제3조).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는 불가피하게 물리력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분석에서도 인권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3,097건으로 전체 3,929건의 78.8%를 차지하고 있다.¹⁾ 경찰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가 많은 기관으로 비춰지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으나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국민과의 접촉이 가장 많으며,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찰의 임무는 사회와 개인의 보호에 있으며, 공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경찰법에서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1) 국가인권위원회의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의 진정사건 통계, <http://www.humanrights.go.kr>

아니 된다(경찰법 제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의 보호를 경찰의 중심적인 과제에 두고 있는 것은 경찰활동이 국가나 사회,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이 때 합법적인 절차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법집행작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국가와 사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법에 의한 공정한 경찰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유형

가. 수사시의 인권침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주로 수사과정, 불심검문, 시위진압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사를 통한 사회방어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보호 의무까지 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사활동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범인을 잡아 사회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욕이 앞서 불법적인 수사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불법적인 수사활동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활동일지라도 수사기관의 일상적 업무수행이 개인에게는 치명적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특히 구속수사의 경우 나중에 무혐의 결정, 무죄판결 등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언론보도, 소문 등으로 주위에서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향후의 사회생활

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구속기간 중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 또한 가족들의 고통도 적지 않다. 마음고생 뿐 아니라 소송비용과 생활의 균형 파괴로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에 대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가운데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피의자의 권리 불고지이다. 체포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소위 ‘미란다 원칙’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것은 198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부터이며,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고지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보장의 시작은 자신의 권리를 알려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범죄자의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는 영장주의가 원칙이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는 현행범에 대한 체포와 긴급체포가 있다. 현행범의 경우 경찰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체포라는 특성상 체포과정의 인권침해 외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적으나 긴급체포의 경우 남용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체포는 범행과 체포 사이의 시간적 접촉성이 없다는 점에서 현행범의 체포와 구

별된다. 긴급체포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장주의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중범죄를 범한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영장주의의 예외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의자의 체포시 총기 등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도 문제되고 있다. 경찰관의 경찰장구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은 여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총기사용에 의한 피의자의 사망 또는 부상은 대부분 도주하는 피의자에게 정지를 명하였으나 정지하지 않은 경우에 총기를 사용하여 검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할 때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경찰이 범인검거나 시위진압 과정에서 흉기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경찰관에게 총기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총기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며,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총기의 사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경찰관의 보호와 범인의 검거의 효율성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과거 문제되었던 고문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은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지금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과거 많은 공안사건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나. 집회·시위에서의 경찰력 행사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와 관련하여 항상 문제된다. 이 두 가지 이념의 조화를 위해 위험이 적은 옥내집회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옥외집회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러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이념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대를 해산시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 폭력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위의 해산에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의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계를 넘는 폭력사태가 시위의 해산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후의 조사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시위의 해산과정에서의 구타와 성추행이 과거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경찰의 시위에 대한 대처가 시위의 진압 및 해산 보다는 평화적인 시위의 보장에 중점을 두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 과거 시위의 진압과정에서 광범위하게 구타, 성추행과 같은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의 시위에서 정부가 시위의 주체를 이적단체로 생각하고 와해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신속한 수사를 강요받고 있는 수사관들에게 과잉수사를 부추긴 측면도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장에 중점을 두면서 이러한 과잉진압 시비 등의 우려는 많이 사라졌으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발할 우려도 있다.

다. 불법 도, 감청 등 사생활 침해

휴대전화에 대한 도, 감청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쉬워지면서 불법 도, 감청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인권보호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도, 감청은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단체나 정치인 등에 대한 사찰은 금지되어 있으나 과거 불법 도, 감청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으며, 개인에 의한 도청이나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을 침해는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골목이나 대로에 설치되는 카메라에 대해서도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사생활의 보호는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불법 도, 감청이 늘어나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양식이 통신수단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으로, 과거와 같이 미행 등의 수사방법보다는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 등이 효과적인 수사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신수사가 늘어나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감청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생활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설치를 원하고 있다. 이는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으로 지나친 사생활보호는 범죄자의 활동의 자유만을 보호한다는 일반시민들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한 생활과 사생활 침해 가운데

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안전한 생활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악용의 소지를 제거하면서 순기능을 살려가야 할 것이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 불심검문시 경찰관은 먼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도 밝혀야 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심검문을 시작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 공무수행이 된다. 또 불심검문시에는 경찰관이 해당자에게 그 목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불심검문시 소지품 검사는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검문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가방이나 여성의 핸드백을 함부로 뒤져 서적 등 증거를 찾아내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임의동행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법판결 이후 과거와 같은 무차별 임의동행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영장 없이 임의동행형식으로 수사기관에 불법 유치하는 사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수사방법으로 임의동행은 피의자신문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 구속영장의 발부와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라.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관련 인권침해

경찰서에는 범죄혐의자의 일시적 구속이나

보호를 위하여 유치장을 설치하고 있다.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인권침해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던 유치장의 위생과 시설에 대하여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유치장의 지나치게 낮은 화장실 문으로 인하여 화장실의 사용시 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치장 화장실 문에 대한 전면적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시설의 부실에 의한 인권침해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치장의 시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유치장에 유치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수색 가운데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알몸수색, 특히 여성피의자에 대한 알몸수색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유치장내 알몸수색 관행이 헌법상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등 유치장의 운영에 대하여도 문제가 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안경의 반입금지, 장애자에 대한 목발의 반입금지 등 과거 관행적으로 행해 왔던 일에 대하여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점

경찰의 인권침해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

선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은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바로 잡기가 매우 어렵다. 경찰이 인권을 침해할 경우 국민은 이를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원상회복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기관의 잘못을 사후에 바로 잡기는 매우 어렵다. 인권에 대한 침해는 일단 이루어지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차선택이라 할 수 있는 배상이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도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법집행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는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국민의 인권의식의 신장에 따라 국민에 의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과거에는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고소, 고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 사안 역시 과거에는 인권침해로 생각하지 않던 사안들에 대하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경찰과 관련한 많은 진정이 제기되고 있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유형들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인권침해사례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경찰의 폭력, 가혹행위,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의한 불공정한 조사도 인권침해로 생각하게 되었다. 인권침해로 진정 또는 고소·고발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및 가혹행위가 가장 많으며,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의 인권침해는 경찰작용의 본질상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 수사의 경우 수사의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필요한 한도를 넘는 경우 인권침해가 되는 것이며, 그 범위는 인권의식의 발달에 따라 점차 넓어지고 있다.

4. 경찰의 인권보호 노력

가. 인식의 개선

국민의 인권의식의 신장과 함께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면서 경찰 스스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과거에 비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경찰활동에서 인권최우선 정책을 펴면서 자체감찰의 강화, 청문감사관제도의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권위적인 모습을 버리고 친근한 경찰로 다가가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이 국민의 친근한 이웃이 될 때 인권침해의 소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 경찰상을 지우고 민주적 경찰,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경찰을 지향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가깝고 친근한 경찰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하여 마스코트를 만들고 “경찰은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으며, 여러 행사를 통하여 권위주의를 탈색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제도적 개선

제도적 개선방안도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강화와 일선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제도의 신설을 통하여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이 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경찰에게 알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청문감사관은 모든 경찰서에 과장급 간부로 배치하여 간부가 국민을 상대로 경찰에 대한 불만의 접수, 조사과정이나 유치장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의 구제, 경찰의 활동방식이나 업무처리 절차 등의 개선 등 경찰활동 전반에 대하여 직접 국민의 불만을 수용하는 기관으로 민원업무를 간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인권보호와 함께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대국민 서비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과거 집회와 관련하여 불법시위의 진압에 중심을 두던 정책에서 벗어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채택하여 집회자의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가급적 물리적 충돌을 막아 이 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 방안의 하나이다. 또한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던 피의자신문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외에도 참고인과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퇴직경찰관중 수사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일선경찰서에 배치하여 고소, 고발 등의 민원 접수 전에 상담을 실시하는 수사민원상담제를 도입하고, 참고인수사시 출석조사시 생업에 차질이 없도록 원격지 거주자에 대한 이메일 조사, 팩스, 우편조사 등을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참고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²⁾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의 승진제도 등에도 현장의 근무자를 우대하고 인권의 수호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경찰의 중간간부 확충계획에 따라 많은 경찰관들이 승진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인권보장의 일선에 서 있는 경찰관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 경찰의 능력은 시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능력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장근무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시험에 의한 승진의 비율을 줄이고 현장 근무능력에 의한 승진기회를 부여할 때 경찰관들의 인권보호 의식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 교 육

이러한 제도개선도 결국 교육을 통하여 각자의 경찰관에게 체화될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선 의식의 개혁을 위해 조사경찰서비스현장을 비롯한 여러 지침을 제정, 교육함으로써

조사과정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선 친절과 인권침해방지, 공정한 수사, 욕설·폭언·폭행 등 가혹행위의 금지,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 보장, 피의자를 체포할 때의 미란다원칙 고지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 현장에서는 상황별로 대응방법을 정해 놓고 이의 실천을 경찰관에게 숙지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포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인권교양자료집, 각종 실무매뉴얼의 제작·배포를 통하여 실무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강좌를 개설하여 인권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인권침해를 막고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아직 완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이러한 노력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 시간적으로 충분히 파급되지 않았으며, 위로부터의 개혁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내부 구성원 사이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의 일부 구성원들은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하면 경찰의 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선량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권을 강조한 결과 국민들이 잘못된 인권의식을 가지고 경찰관에 대항하는 사람들

2) 경찰백서, 2001, 135-136면.

이 늘어나고 이는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인권의 보호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법질서위반을 단속하는 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 범죄자의 체포와 처벌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는 범죄자의 체포나 처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에 의해서 체포나 처벌을 행하라는 것이다. 개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인권보호는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하간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6. 맺는말

경찰의 인권보호방안은 소극적 방안인 인권침해방지방안과 적극적 인권보호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인권보호방안은 소극적 방안으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경찰은 범죄예방, 정보수집, 교통, 수사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만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많기 때문이다. 적극적 인권보호방안은 최근에야 부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권이나 피의자의 인권 가운데 그동안 방치되고 있던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는 법의 준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찰의 활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질 때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각종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는 극히 적어진다. 우리나라의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는 경찰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법집행을 하는 경우 인권침해는 일어나기 힘들다. 적극적 인권보호방안으로는 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피해자의 인권보호 특히 성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이 강조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이며, 경찰은 이러한 법의 정신을 지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은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가질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따라서 경찰의 인권수호의지는 국가의 인권보호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국가의 인권정책은 우선 경찰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에 경찰의 인권보호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인권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도 거의 경찰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이 스스로 인권경찰로서의 의식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보호처분 대상자 중에서도 범죄성향이 가장 깊은 소년원 가퇴원자들의 재범률이 다른 유형의 보호처분자들의 재범률보다 월등히 높다는 선행연구와 관련통계 그리고 보호관찰관들이 보호관찰 현장에서 접하는 소년원 가퇴원자에 대한 지도곤란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소년원 가퇴원자들이 범죄를 계속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퇴원자들이 일반 청소년들처럼 가정과 학교 또는 직장에서 어색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또 그 일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며,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년원의 소년원생 교육 및 관리실태와 보호관찰소의 가퇴원자 지도실태 및 지도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소년사법에 있어 더 신뢰할 만한 절차를 확립하고, 소년범죄자들의 삶에 진정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소년원에서의



이 성 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보호관찰관)

처우와 보호관찰에 있어 무엇이 행해져야 하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주요한 목적이다.

2. 가퇴원자 보호관찰실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가퇴원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관찰소의 역할 모색에 연구의 중심이 있지만, 소년원의 교육방식 및 정책의 변화는 가퇴원자에 대한 사회복귀 또는 재활 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가퇴원자 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퇴원 이전 단계인 소년원에서의 생활과 교육의 효과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 퇴원과 가퇴원의 요건 및 절차

가퇴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소년원법, 그리고 보호소년수용지침을 종합하여 볼때 퇴원·가퇴원의 구별기준은 “교정성적의 양호”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로 구분된다. 특히 실제 소

년원에서 퇴원, 가퇴원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호소년수용지침” [2002.9. 25.개정] 제51조는 『교정종합 성적』의 “수”와 “우”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성인범의 경우에는 없는 (조기)퇴원이 소년원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퇴원의 경우, 신청의 기준과 절차를 가퇴원과 비교할 때 가퇴원의 취지가 희석되고,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본래 의미의 가퇴원은 수용기간 중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어서 퇴원보다 수용기간이 짧아 당사자에게 수용기간의 이익이 부여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년원에서 1997년 이후와는 달리 1996년 이전까지는 퇴원보다 가퇴원이 수용기간에서 혜택을 누리는 유리한 처분으로 시행하여 왔다.

그런데 실제 소년원에서는 해마다 차이는 있으나 매년 출원자의 10~30% 정도가 가퇴원과 수용기간이 비슷하면서도 출원 후에는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조기퇴원을 소년원 자체 심사만으로 행하고 있는데 1997년 이후에는 퇴원의 수치가 급격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사법부에서 내린 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만으로 수용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3권 분립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의 문제는 별도의 고려하더라도 퇴원심사가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더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퇴원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 절차가 남아 있으나 이 단계에서 적절한 내용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가퇴원의 경우에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 제25조~제26조에 따라 소년원의 수용처우 기록과 보호관찰소의 환경조사 결과를 기초로 소년원이 아닌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6월에서 2년까지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절차에 따르고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는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린 소년부 판사 외에 검사,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따르는 자의성의 문제가 일어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가퇴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이전(정확히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에는 가퇴원 비율이 98%선을 상회하다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70%선을 유지하였으며, 지난 2001년도에는 갑자기 90%선을 넘어 섰는데, 이러한 가퇴원 비율의 급격한 변화는 가퇴원자 보호관찰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퇴원·가퇴원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여기서는 가퇴원 제도 운영상에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가? 이를 위하여 가퇴원 제도의 취지 및 가퇴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이 절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소년원에서 소년법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가퇴원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한 결과 이것이 가퇴원자 보호관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1) 퇴원 절차의 문제점

소년원에서의 퇴원의 경우에는 소년원 내부의 심리절차와 법무부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퇴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퇴원과 비교할 때 퇴원절차의 적정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퇴원과 가퇴원의 기준이 되는 교정종합성적면에서 검토해 보면, “교정성적 양호(수)”와 “재범가능성이 없을 것”간의 합치성이 높아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소년원생의 재범률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소년원에서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정도로 소년원생들의 요보호성을 제거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데 있다.

더구나 현재의 소년원의 특성화 학교 체제에서 시간 배당기준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성교육은 일부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러한 교육과정 하에서 교과교육성적을 기준으로 퇴원과 가퇴원을 결정하는 것은 “재범가능성”의 측정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또한 평가항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성적은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알아보는 수단에 불과할 뿐 원생의 재사회화 정도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성적이 좋다고 해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럴 개연성만 논할 수 있을 뿐이다. 요보호성의 정도는 인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가퇴원·퇴원절차의 일원화

현행 가퇴원·퇴원의 신청은 교정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소년원의 장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가퇴원을 신청할 것인지 또는 퇴원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의 판단기준은 위에서 살펴 본 대로 결과적으로 퇴원 후 사회내에서의 보호관찰 필요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조기퇴원이 적합한 자로 분류한 경우에도 조기퇴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보호관찰 필요여부 등을 심사할 객관적 기관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하여야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소년법 체계와 매우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소년원장은 소년원 재원자가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퇴원의 신청을, 처우의 최고단계에 달하여 가퇴원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퇴원의 신청을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 대하여 각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일본 소년원법 제12조)라고 하여 퇴원과 가퇴원 모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해당하는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 심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구하고 있다.

3) 가퇴원·퇴원의 사전조사제도 도입

가퇴원과 퇴원의 심사기준은 “보호관찰의 필요”여부, 즉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가? 와 “재범가능성” 유무의 정도가 선별기준이 되어야 함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런데

출원 후 보호관찰 등 사후지도의 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는 가퇴원 및 퇴원신청자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심사기관이 직접 재범가능성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상으로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고, 동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면접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퇴원 예정자에 대한 사전조사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인력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가퇴원자에 대한 사전조사는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의 문제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 퇴원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조사를 보완하고 향후 보호관찰 처우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도 가퇴원·퇴원 사전조사제도 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4)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현재의 환경조사를 보완한 퇴원·가퇴원 사전조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현재 소년원에서의 가퇴원 신청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즉,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퇴원·가퇴원 사전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스스로 조사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999년도 전국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의 연간 가퇴원·가석방 심사 건 수는 3,600 건을 넘는다. 비록 평상시의 심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이 있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및 직원이 있다고 하나 조사 인력의 부족은 소년 개인의 보호와 사회 안전에 대한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조사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소년원의 가퇴원자 처우가 보호관찰에 미치는 영향

현행 소년원 가퇴원생에 대한 보호관찰관들의 대다수 의견은 이들의 지도가 여타의 보호처분자(단기나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나 심지어는 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자들보다도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의 상당부분은 가퇴원자들의 특성에 기인한다. 소년원생의 이러한 특성은 그대로 가퇴원자들에게 이어지는데 이것은 가퇴원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분명해 진다.

한편 가퇴원자들의 지도곤란 또는 사회복귀의 실패로 이어지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소년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그들의 요보호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본 연구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가퇴원생들이 소년원 교육 중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컴퓨터 교육이 유일하였다. 물론 가퇴원자들의 소년원 교육에 대한 인식만을 가지고 소년원 교육을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로 소년원생들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이탈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지적 능력은 물론 인내력과 학습의욕 또한 일반 학생들과 비교할 때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년원에서 소년원 수용자들의 이러한 특성을 분류 시에 반영하였으리라 생각하지만 단기간(특히 단기소년원 송치자)의 학습 만으로는 그들의 지적 호기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보호성을 치유하기 힘들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는 가퇴원자들이 가퇴원에 대하여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단기 처분인 6호 처분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단기 소년원생의 최저 수용율은 4개월이지만 보통 5개월 정도 수용된 후 가퇴원 된다. 즉, 최소한 4개월은 넘어야 퇴원이든 가퇴원이든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조기 퇴원이 아니라 가퇴원 될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일부는 가퇴원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불만을 갖게 된다. 차라리 만기 퇴원을 하더라도 보호관찰을 받는 번거로움과 자유의 제한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보호관찰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보호관찰에 대한 거부감은 지도관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소년원 송치자에게는 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가퇴원 시기를 3개월 이내로 앞당기어 가퇴원을 실질적인 혜택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용처우로 인한 악습 감염의 폐단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성인의 경우 단기자유형의 폐해는 일반화되어 가능한 형사법원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소년의

경우는 이러한 관념이 희박한 듯 하다. 통상 5-6개월 정도로는 교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고 범죄에 감염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단기가퇴원 대상자들에게는 짧고 강력한 처우를 통하여 자신의 죄과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을 인정케 하고, 단기구금에서 오는 폐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년원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도 단기 대상자의 경우가 일반 대상자들에 비하여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퇴원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식조사 결과

가. 소년원 교육 및 보호관찰에 대한 가퇴원자 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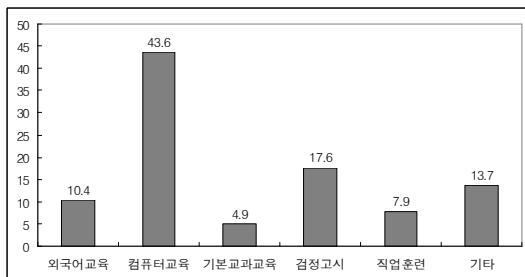
다음은 가퇴원자 설문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는 2002년 8월 현재 보호관찰중에 있는 소년원 가퇴원자로서 총 229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86.6%가 가퇴원한 지 1년 이내였으며, 처우과정은 단기 6호 처분의 경우는 98명(45%), 장기 7호 처분은 120명(55%)이었다.

먼저 소년원 가퇴원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년원 수용전 범죄 경력, 최초 체포연령 등을 조사하였다. 우선 연령은 만 나이로 조사하였는데, 18-19세가 가장 많았고, 평균 나이는 18세였다. 이들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132명(60.3%)으로 가장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고등학교중퇴 이하학력 소유자가

85.4%에 이르는 저학력 현상이 눈에 띄었다.

다음으로 최초 체포연령을 조사했는데 15-16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초 체포연령의 평균나이는 14.8세로 나타났다. 가퇴원자들이 소년원에 가게 된 범죄명은 절도, 특수절도의 경우가 124명으로 56.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폭행, 상해가 46명으로 20.8%, 강도, 특수강도가 24명으로 10.9%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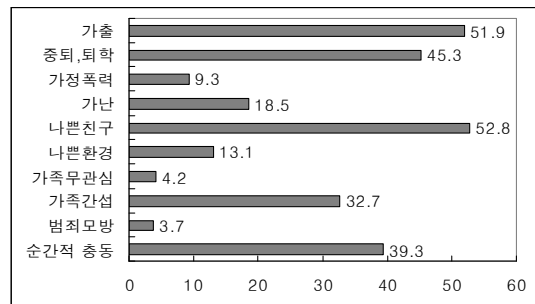
그리고 가퇴원자의 45.7%만이 양친이 생존하고 있어, 형식적 결손가정의 비율이 54.3%에 이르렀으며, 친부만 있는 경우가 17.4%, 친모만 있는 경우가 14.2%로 절반 이상의 가퇴원자들이 ‘가족붕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가퇴원후 소년원 교육의 활용도(%)

한편 조사에 응한 가퇴원자들은 소년원 교육프로그램 중 컴퓨터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56.0%), 소년원교육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도 외국어 교육의 경우는 33.3%, 기본교과는 33.8%, 검정고시 46.3%, 직업훈련 45.9%정도가 각각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컴퓨터교육은 가장 높은 66.9%가 효과를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이 가퇴원 후 소년원 교육이

얼마나 실제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컴퓨터 교육이 43.6%로 가장 높았고, 검정고시는 17.6%, 외국어교육은 10.4%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10%미만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하여 현행 소년원 교육의 효과성과 현실적합성에 의문이 가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림 2> 가퇴원자가 생각하는 청소년범죄의 원인

한편 <그림 2>에서 보듯이 소년원 가퇴원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비행원인에 대한 질문과 사회복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요인에 대하여, 비행원인에 대한 11개의 관련 항목을 제시하고 자신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모두 응답하도록 했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나쁜 친구로서 113명, 52.8%가 이 요인을 꼽았으며, 다음은 가출로써 111명, 51.9%가 이 응답을 보였다.

나. 가퇴원자 보호관찰에 대한 보호관찰 직원의식 조사

가퇴원 담당 보호관찰관(직원)들은 가퇴원자에 대한 지도 방향을 통제보다는 개별처우와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동시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리하는 것을 지지하여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호관찰소가 가퇴원자 지도방법으로 집중보호관찰과 방문지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에 따라 학교와의 연계성을 통한 지도나, 멘터(Mentor)프로그램과의 연계지도, 음악치료, 영화치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일반보호관찰대상자들과 함께 처우하고 있었다.

또한 비록 현재는 가퇴원자 처우에 있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데 소극적이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시간과 관심의 부족현상이 해소된다면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이나, 상담실, 종교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지역사회자원으로 보호관찰소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이나 보호관찰전문위원에 대한 선호도는 미미하였는데, 이 같은 결과는 보호관찰 직원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진심으로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범죄예방위원 조직이 지역사회 명망가 중심의 조직인 관계로 이들의 활용상의 어려움과 봉사태도에 실망한 점 등이 반영되었다고 보여 진다.

4. 가퇴원자 보호관찰 개선방안

가. 가퇴원 제도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가퇴원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현

행 가퇴원 제도의 운영과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가퇴원자에 대한 소년원의 교육과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은 상당부분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소년원에서의 교육의 성패는 보호관찰의 성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고, 반대로 보호관찰의 실패는 가퇴원자로 하여금 다시 소년원으로 복귀하게 만들거나 거듭 재범자로 사회의 안전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 퇴원의 절차 및 심리요건을 강화하여 가퇴원에 대한 불만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며 ㉡ 가퇴원·퇴원절차를 일원화하여 심리절차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 가퇴원·퇴원에 대한 사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며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현행과 같이 소극적인 가퇴원 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밀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원에서는 수용능력을 늘리는데 주력하기보다 소년원 출원자의 재범율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소년구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의 환경을 정비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관찰 현장에서 그 효과를 의심받고 있는 단기 소년원 송치자에 대한 가퇴원 시기를 3개월 이내로 앞당기어 가퇴원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느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향적으로는 단기소년원 송치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에서와 같은 병영캠프(Boot Camp Programs)를 도입

하여 군대식 훈련과 같은 강하고도 짧은 충격 경험을 통한 강력한 처우를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보호소년수용지침의 개정과 소년원 시설을 활용하면 큰 예산의 소요 없이도 병영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를 보호처분 취소함이 없이 소년부 판사의 동의를 얻어 병영훈련을 받도록 한다면 단기 구금에서 오는 폐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6호 단기 처분자에 대한 교육부담의 감소는 자연히 7호 처분자에 대한 집중지도로 이어져 구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가퇴원자를 위한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

Wooldredge(1988년)는 미국 일리노이주 “비행소년들의 재범에 관한 연구”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이 연구는 그 “무엇이든”의 차이가 재범율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알려 준다』라고 하여 지역사회 처우(community treatment)와 결합된 장기 보호관찰 감독이 이후의 재범 억제에 특히, 구금이나 만기퇴소와 비교할 때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범죄 소년을 지역사회에 그냥 방치하기 보다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도와준다면 재비행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다만 지역사회교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처우(community treatment)와 결합된 보호관찰 감

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될 뿐이다. 지역사회내 처우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힘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기존에 형성돼 있는 지역사회내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소년보호시설과 종교단체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행 청소년 보호시설 등 지역사회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가퇴원자 보호관찰집행현장의 개선방안

현행 가퇴원자 보호관찰을 포함한 소년 보호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적 처우프로그램의 부족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에서의 보호관찰 교육의 미흡, 가퇴원자의 자원보호자 선정의 문제, 소년원의 직업알선의 내실화, 보호관찰소와 소년원간에 업무협조 부재, 가퇴원자 처우방법의 공유 및 연구결과 축적 문제 등 가퇴원자 보호관찰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소년 보호관찰에 대한 지도방법, 많은 연구결과에서 효과가 입증된 병영훈련(Boot Camp) 프로그램 및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방안의 도입문제와 지역사회 시설내 처우의 강화문제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년보호관찰이 지향해야 할 바를 대신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자금세탁범죄에 관한 동향

김 혜 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자금세탁에 대한 전화감청의 인정범위¹⁾

1. 독일의 감청은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10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과학기술과 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인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감청이 가능한 법률조항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형사소송법(StPO) 제100a조에 감청이 가능한 범죄유형을 열거하고 있다.²⁾

형사소송법 제100a조 제2호에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한 전화감청에 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즉 독일 형법 제261조에서 자금세탁으로 열거하고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전화대화를 감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1998년 5월 4일에 조직범죄관련 입법과 함께 형사소송법에 새로 규정된 것이다. 동조문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 제100a조에 열거된 범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사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자금세탁의 혐의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실무에서 영장법원에 전화감청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결국 자금세탁범죄 구성요건의 모든 확장이 자동으로 전화감청의 가능성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이러한 경향과 달리 함브르크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Hamburg)³⁾에서는 자금세탁 용의자(Beschuldigte)가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정범이거나 공범인 경우에 자금세탁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독일 형법 제261조 제9항 제2문을 근거로 자금세탁 용의자가 동시에 열거된 범죄유형(Katalogtat)의 행위자인 경우에 전화감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Berliner Kammergericht에서는 이러한 사례에서도 전화감청이 허용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연방대법원(BGH)은 2003년 2월 26일 결정에서 자금세탁에 근거한 행위가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a조에 열거된 범죄유형이 아니고 독일 형법 제261조 제9항 제2문의 선행조문에 근거하여 자금세탁으로 판

1) 자세한 내용은 Janovsky,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wegen Geldwäsche", Kriminalistik, 2003/7, S. 453 이하 참조.

2) "최근 독일에서의 감청에 관한 논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호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7호, 2003·5/6, 44면 이하 참조.

3) OLG Hamburg, StV 2002, S. 590.

결 받을 것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세탁을 이유로 (전화)감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전화감청이 독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기본권에 침해되는 것이라는 기존의 제한된 해석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독일연방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자금세탁을 이유로 한 전화감청은 상당히 좁은 범주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처럼 축소된 해석이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a조의 범죄유형의 열거에 독일형법 제261조(자금세탁)를 삽입한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3. 만약 전화감청이 불법적으로 지시된 것이라면, 전화감청을 통해서 획득된 사실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범행을 증거할 만한 다른 유용한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전화감청 기록을 종종 다른 절차를 위해 복사하거나 혹은 예방경찰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화감청기록은 형사소송법 제1006조 제6항에 의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파기시켜야 한다. 특히 자금세탁범죄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정보보호 차원에서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 독일 FIU의 동향

1.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의 중앙부처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연방범죄수사국(BKA) 내의 독일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e/FIU Deutschland)는 2003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11차 “에그몽그룹(Egmont-Gruppe)” 본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형사소추의 범주에서 자금세탁대응에 대한 독일의 입장이 모든 실질적인 국제적 입장에 맞게 되었다. 독일 FIU의 에그몽그룹 가입은 2002년 8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에그몽그룹의 가입과 함께 독일연방수사국(BKA) 내에 있는 FIU가 지금까지 Interpol과 Europol의 정보채널과는 별도로 외국의 FIU에 직접 접촉이 가능하게 되었다.

2. Egmont-그룹은 국제적인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중심단체로 1995년 6월 9일 벨기에와 미국의 FIU에 의해 처음으로 브루셀의 에그몽에서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15개국으로 출발하여 2003년 현재 84개국이 에그몽그룹에 가입되어 있다. 에그몽그룹의 목표는 FIU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국제적 협력작업에서 통일된 입장정리 등이다. 따라서 자금세탁 혹은 테러자금의 국제적 사례를 보다 잘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 혐의거래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요구한다. 또 이를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관련국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국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국의 FIU모임을 조직하고 있다.

새로 들어 온 책

자료문의: 02-575-5284

<http://www.kic.re.kr>

[정기간행물]

- 警察學論集 v.56 no. 10
- 犯罪と非行 8/2003
- 犯罪學雜誌 8/2003
- 法律時報 10/2003
- 法律判例文獻情報 6/2003
- Juristno. 1253
- 判例時報 no. 1829
- 刑法雜誌 v. 43 no. 1
-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v.40 no. 3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108 no. 5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68 no. 4
- Bewährungshilfe 2/2003
- Canadian Journal of Law & Society v.18 no. 1
- Contemporary Sociology v.32 no. 5
- Crime and Delinquency v.49 no. 4
- Crime, Law and Social Change v.40 no. 1
- Criminal Justice Abstracts v.35 no. 3
-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30 no. 5
- Deutsche Richterzeitung(DRiZ) 8/2003
- Deviant Behavior v.24 no. 5
-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 Criminal Justice v.11 no. 2
- Gol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GA) 8/2003
-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42 no. 4
- Int'l Review of Victimology v.10 no. 1
-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18 no. 10
-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19 no. 3
- Juristenzeitung(JZ) 15,16/2003
- Juristische Ausbildung(JURA) 10/2003
- Juristische Rundschau 9/2003
- Juristische Schulung(JuS) 9/2003
-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KJB) 9/2003
- Kriminalistik 7/2003
- Kriminologisches Journal 3/2003
- Kritische Justiz 2/2003
- KritV 2/2003
- Law and Society Review v.37 no. 3
-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MDR) 17/2003
- Monatsschrift für Kriminologie und Strafrechtreform 4/2003
-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NJW) 42/2003
- Neue Justiz 8/2003
-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NStZ) 9/2003
- NstZ-RR 10/2003
-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ÖJZ) 18/2003
- Schweizerische Zeitschrift für Strafrecht(NStrR) 3/2003
- Social Forces v.82 no. 1
- Social Problems v.50 no. 3
- Strafverteidiger(StV) 10/2003
- Theoretical Criminology v.7 no. 3
- Violence and Victims v.18 no. 3

- Wistra 8/2003
-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2/2003
-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10/2003
- Zeitschrift für Strafvollzug und Straffälligenhilfe 4/2003
- Zeitschrift für Urheber- und Medienrecht (ZUM) 7/2003
- Zentralblatt für Jugendrecht 8,9/2003

[단행본]

- The antitrust laws: Shenefield, John H.-Washington, D.C., The AEI Press, 2001.
- Antitrust law, economic theory and common law, Hylton, Keith 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Antitrust law, Posner, Richard A.-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 ABA standards for criminal justice, discovery and trial by jury, American Bar Association-Washington, D.C., American Bar Association, 1996.
- Quick reference to correctional administration/Phillips, Richard L.-Maryland: Aspen Pub., 2000.
-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policing, judiciary, and corrections/Ebbe, Obi N. Ignatius-Woburn: Butterworth-Heinemann, 2000.
- Prison and jail administration: Carlson, Peter M.-Maryland: Aspen Pub., 1999.
- Sanktionen und Strafauswahl in Frankreich: Eine historische, rechtspolitische und dogmatische Analyse der Ermessensfreiheit des französischen Strafgerichts/Müller, Susanne-Freiburg i. Br.: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2003.
- Kultur·Kriminalität·Strafrecht, Festschrift für Thomas Würtenberger zum 70. Geburtstag am 7. 10. 1977, Herren, Rüdiger,-Berlin, C.H.Beck, 1977.
- Will Electronic Monitoring Have a Future in Europe?: Contributions from a European Workshop, June 2002/Mayer, Markus-Freiburg i. Br.: Max-Planck-Institut, 2003.
-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v. 8-9. World Society of Victimology-Oxon: A B Academic Publishers, 2001-.
- Zeitschrift für Urheber- und Medienrecht, jg. 46.NOMOS Verlagsgesellschaft-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2002.
- Law and the American health care system: Rosenblatt, Rand E.-New York :Foundation Press, 2001.
- Wettbewerbsrecht und Kartellrecht/Hönn, Günther-Heidelberg: 2000.
- Grundz ge des Kartellrechts/Commichau, Gerhard-München: 2002.
- Kartellrecht: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GWB) und EG-Kartellrecht/Sauter, Herbert-München: 2000.
- Wettbewerbs-und Kartellrecht Gewerblicher Rechtsschutz: Examenskurs für Rechtsreferendare/Haberstumpf, Helmut-München: 2003.
- New approaches i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kosovo, east timor, sierra leone and cambodia/Ambos, Kai-Freiburg i. Br.: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2003.
- Wirtschaftskriminalität und Korrupcion: Vorträge anlässlich der Herbsttagung des Bundeskriminalamts vom 19. bis 21. November 2002/Bundeskriminalamt-Wiesbaden: Bundeskriminalamt, 2003.
- Evidence in trials at common law: 2003 cumulative supplement, Wigmore, John Henry-New York, Aspen publishers, 2003.

학술교류 협정 체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재상 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신인령 총장)와 10월1일(수) 교육·연구분야에서 상호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학술교류 협정에 의하여 형사정책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양측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5년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술교류 및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동 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2. 연구 및 강의 목적의 인적 교류
3. 학술정보자료 및 간행물 상호 교환
4.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물 공동활용
5.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초빙연구위원 위촉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정현미 교수는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의 연구 참여확대의 일환으로 '사면복원의 재조명'이라는 연구업무 수행에 참여하게 된다.

세미나 개최안내

연구원은 11월 13일(목)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일탈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인터넷 초고속망의 급속한 보급으로 새로운 삶의 세계를 넓혀 주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잠재된 인터넷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일탈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이어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의 순으로 관련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표지 이면의 세미나개최 안내 참조).

연구원 퇴직

형사사법연구실 황호원 박사가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9월 1일자 퇴직을 하였다. 황호원 박사는 금년 3월에 입사하여 그동안 연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함께 풀어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열쇠]

- 가을의 산이나 계곡에 붉게 물든 경치를 보기 위해서 놀이 가는 것
- 뜻밖에 저절로 생기는 일(○○↔필연)
- 나무에서 치통피드가 발생하여 산책을 하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 한 번 사용한 것을 다시 만들어 사용함
- 조선시대 세조가 임금으로 등극하기 전의 군호
-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공경하는 마음
- 비발디 안토니오에 대표적인 계절별 음악
-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 한 집안의 교훈(敎訓)
- 아버지의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내려오는 계보
- 범죄행위로 취득한 타인의 물건
-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
- 사람이 보통 가질 수 있는 인정
- 물이 있는 저수지나 개천 등의 언저리

- 서로 교제를 끊고 만나지 않음
-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
- 대학에서 흔히 데모할 때 붙이는 벽보
- 절기가 바뀌는 사이(계절과 계절사이)

[세로열쇠]

- 화투 또는 포카놀이
- 조선시대 최초로 폐위된 왕으로 성종의 맏아들
-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을 피하는 일
- 겸손하게 거절하거나 남에게 양보함
- 헌법 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는 서도민요
- 대사관에서 제일 높은 사람
-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칭 하는 말
-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이 모인 상태
- 국가에서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주는 기장
-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
- 서로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것
- 행정구역상 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
- 이름난 기생(황진이)

응모요령 : 풀이난의 빈칸을 채운 다음 관제엽서에 붙여 우송하여 주시는 분 중에서 정답을 보내주신 4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마 감 : 2003년 12월 10일(수)까지

보내실 곳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

[개정판]

경 찰 학 개 론

이 황 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 병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최 응 렬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래 유능한 경찰관을 꿈꾸며 전국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에서 경찰학을 전공하는 학도들을 위해 우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경찰학개론]을 출간하였다. 우리 연구원의 조병인 연구실장(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황우 교수(초대 경찰학회장) 그리고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부의 최응렬 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가 공동 저술한 이 책은 체제와 내용을 경찰조직의 작동원리와 경찰의 발전방향 및 현대경찰의 변화방향에 맞추어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현직 경찰관들의 필독서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책은 총론 6개의 장과 각론 4개의 장을 합하여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 편에서는 학습의 기초, 경찰의 조직, 경찰의 인사, 경찰의 활동, 경찰통제 등을 다룸으로써 ‘자율과 책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경찰조직의 역학관계를 터득하도록 유도한다. 각론 편에서는 경찰의 범죄대응체계를 비롯하여 선진경찰의 필수요건으로 논의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및 경찰의 공공질서 관리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경찰과제인 가상공간의 질서관리(Cyber Policing)를 다룸으로써 현대경찰의 변화방향을 깨닫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TEL 571-0363, FAX 571-748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서회원제] 안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범죄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법학, 사회학, 범죄심리학 등 형사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연구보고서 및 학술연구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성과를 폭넓게 보급하기 위하여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회원구분 및 연회비

- 일반 : 40,000원(2002년 연구보고서 중 10종)
- 기관 : 70,000원(2002년 연구보고서 중 전체)

2. 가입방법 및 회비납부

- 가입신청서 및 회비를 은행에 납부
- 지로구좌 7528145(형사정책연구원)
- 국민은행 814-25-0002-582(형사정책연구원)

3. 회원에 대한 특전

- 형사정책연구(계간), 형사정책연구소식(격월간) 무상으로 우송
- 연구원 도서실의 자료열람 이용
- 세미나 초청(참석시 자료집 제공)
- 기발행된 보고서 10부 이상 구입시 30% 할인

4. 가입문의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
전화 02-571-0363, 3460-5153
팩스 02-571-7488
e-mail : kneky@kic.re.kr

□ 2002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

- 0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 02 형사절차상 digital evidence에 관한 연구 -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03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방안
- 04 소년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
- 05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연구

- 06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터링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07 컴퓨터사용 사기범죄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 08 한국의 신종 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 09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 10 테러리즘 관련 법규 정비방안
- 11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적응실태와 문제
- 12 금융감독기관의 범죄조사 효율성 제고방안
- 13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과 한국의 부정방지시스템 진단
- 14 총기강도 사건의 실태와 대책
- 15 생명공학 남용과 법적 규제를 위한 연구
- 16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 17 인터넷미디어의 일탈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18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 19 여자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 20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
- 21 유전자정보의 보호와 이용통제에 관한 연구
- 22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 23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4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5 금융사기범죄에 관한 연구 - 특히 유사금융사기 범죄를 중심으로
- 26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 수사 및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 27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
- 28 한국의 민간경비: 성장과 함의
- 29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 추세분석
- 30 수용자의 법적권리에 관한 연구
- 31 미국의 교정현황에 대한 연구
- 32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
- 33 보험사기의 실태와 방지방안
- 3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40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41 수사경찰의 피해자 대책의 현황과 과제

형사정책학에 관한 본격적 교과서 등장
사법시험 고득점에 든든한 길잡이
국내외의 최신 이론과 자료를 망라한 역작
국책 형사정책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축약

韓國刑事政策研究院 刊

[제7판]

刑事政策

박 상 기(연세대 교수)

손 동 권(건국대 교수)

이 순 래(원광대 교수)

최근 형사정책학의 비중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서는 형사정책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업과 수험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고 범죄문제를 다루는 실무가들이 형사정책학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저술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세 사람의 저자가 전공분야별로 가장 최신의 이론과 자료를 활용하여 집필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이려 노력하였으며, 형사정책에 관한 전문·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그동안 연구한 500여건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우리 형사정책학의 현주소를 밝혀주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아울러 외국의 최신자료까지 최근의 세계적인 형사정책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TEL 571-0363, FAX 571-7488

[형사정책연구소식] 투고안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문제에 대하여 국민을 계도하고 형사정책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격월간으로 [형사정책연구소식]지를 발간하여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소식] 제81호, 1/2월호(2004)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한 내에 원고를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내용 :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범죄문제 등에 관한 논단 및 제언, 번역자료, 학술동향 등

1. 논단 및 제언 : 소식지인 점을 감안하여 논문이 아닌 사회적 관심과 시사성이 있는 글로서 가급적 평이한 수준으로 A4용지 5매 정도 내외의 분량으로 집필
2. 번역자료 :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자료로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A4용지 5매 정도 내외의 분량으로 집필
3. 형사정책 주요동향 : 국내외 관련분야의 학계소식 및 최근의 학술정보를 A4용지 2~3매 정도 내외의 분량으로 집필

응모자격 : 1. 형사정책관련분야 석사과정을 마친 자
2. 형사사법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및 연구경력자

원고매수 : A4용지 80칼럼 25행으로 5~6매 정도

원고마감 : 2004년 2월 10일(2월말 발간예정)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지급(단,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한함)

- 참고사항 :
1. 소식지의 성격을 감안하여 가급적 평이한 수준
 2. 원고는 PC(아래아한글프로그램)로 작성하여 송부(e-mail 송부 가능)
 3. 투고자의 연락처를 명기하고 상반신 사진 1매 제출

보내실 곳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담당 : 김능겸)
전화 02-571-0363, 3460-5153
팩스 02-571-7488
e-mail : kneky@kic.re.kr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4호(통권 제56호, 2003·겨울호)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제출 및 게재

-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형사정책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형사정책관련 분야의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나. 제출된 원고는 당 연구원 관련규정에 따라 간행물출판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심사를 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원고 내용의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필자는 이에 응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다. 원고 집필자의 자격은 학계의 대학교수, 실무계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형사정책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연구경력자로 한다.
- 라. 당 연구원 간행물출판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채택된 원고는 매호 발간 후 연구원 관련규정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2. 원고 집필요령

가. 논문의 구성

- 1) 제목(국·영문 혹은 국·독문)
- 2) 본문(각주 포함)
- 3) 참고문헌
- 4) 국·영문초록(영문 또는 독문) : A4용지 single space 1-2매 정도 분량(제목, 필자명, 소속 및 직책표기)

나. 논문작성 요령

- 1) 한자의 혼용여부 : '국·한문 혼용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독문도 괄호안에 넣을 수 있다.

- 2) 주 처리방법 : '각주는 논문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 3) 단위의 표기 : I., 1., 가., 1), 가) 순으로 구성하며. 반드시 제목 위, 아래 한 행씩을 띄어준다.
- 4) 참고문헌 : 국내문헌, 일본문헌, 구미문헌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 단 일본문헌의 순서는 우리식의 한자발음에 의하여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영미문헌의 경우에는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발행년도 순으로 구성한다.
- 5) 표와 그림은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본문에 표와 그림이 들어갈 자리를 명시하며,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우측부터 시작하고, 그림은 하단의 중앙에 반드시 위치하도록 한다.

3. 원고분량 : 원고 집필은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여 A4용지에 80컬럼 27행으로 15-20매 내외로 하며, 글자는 11포인트 크기로 한다.

4. 투고기간 : 2003년 11월 29일(토)까지
(12월말 발간 예정)

5. 보내실 곳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
(담당 : 김능검)
전화 : 02-571-0363, 3460-5153
팩스 : 02-571-7488
e-mail : kneky@kic.re.kr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 안내

대주제 :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일탈현황과 대책 -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3년 11월 13일(목) 13:30~17:30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 2층 대회의실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사 회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14:20-14:50 1주제: 사이버상의 청소년 일탈과 중독 실태

발 표 :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4:50-15:20 2주제: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와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

발 표 : 이성식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15:20-15:50 3주제: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 표 : 김기봉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15:50-16:10 휴 식

16:10-17:00 지정토론

토 론 : 조동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동근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 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7:00-17:30 종합토론

연락처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

전화 (02) 575-5285, 3460-5153 / 팩스 (02) 571-7488

홈페이지 : <http://www.kic.re.kr>

